

※ 본 논의내용은 실무작업반 참석자들이 제시한 내용으로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① 신규 플레이어 진입]

1.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1
2. 은행업 추가인가 3
3.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4

[②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1. 카드사 종합지급 결제 업무 허용 6
2. 증권사 법인결제 업무 허용 8
3.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11
4.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 한도 도입 12
5. 비은행금융기관 업무 확대 14
6.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 확대 16

1 신규플레이어 진입

과제	① 스몰라이센스 및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주요 내용	<p><input type="checkbox"/> (업무범위) 은행이 수행 중인 업무범위를 세분화하여 특화은행 설립 * 금투업, 보험업의 경우 종목별 인허가 방식을 도입 중</p> <p><input type="checkbox"/> (예)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대출 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 지급결제 특화은행, 중·저신용자 전문은행 등</p> <p><input type="checkbox"/> (요건) 필요시 자본금 규제 등을 지방·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완화 * (예: 자본금) 250억원(시중은행 1천억원, 지방·인터넷은행 250억원)</p> <p><input type="checkbox"/> (진입규제)</p> <p>○ 1안 - 단일 스몰라이센스 도입 → 개별 인가 시 심사 및 조건 부가 등을 통해 업종, 영업방식 등 제한</p> <p>○ 2안 - 은행업무, 영업형태를 각각 세분화하여 선택·조합</p> <p>* 1. (은행업무) 여수신, 유가증권·채무증서 발행, 환업무, 내·외국환, 보호예수, 팩토링, 채무보증 및 어음인수 등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p> <p>2. (영업형태) 거래상대방(개인, 기업), 영업구역(전국, 지방), 영업점(온라인, 오프라인) 등</p> <p><input type="checkbox"/> (경과규정) 필요시 본인가 후 시범운영 기간 부여</p>																													
해외사례	<p><input type="checkbox"/>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추세</p>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국의 은행업 인가단위 세분화 사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국가</th> <th style="width: 20%;">인가단위</th> <th style="width: 65%;">차별적 진입요건</th> </tr> </thead> <tbody> <tr> <td>미국</td> <td>특수목적은행</td> <td>•예금·대출·수표지급 중 일부업무만을 수행 •사업모델에 따라 개별적 자본금요건 적용</td> </tr> <tr> <td rowspan="2">영국</td> <td>소규모특수은행</td> <td>•소매금융으로 업무범위 제한 •자본금요건 완화(5백만→1백만파운드)</td> </tr> <tr> <td>챌린저뱅크</td> <td>•소매금융, IT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화 •최대 12개월 시범운영</td> </tr> <tr> <td>호주</td> <td>제한적 인가</td> <td>•예금한도 및 거래상대방 제한 •최대 24개월간 자본금 및 지배구조요건 등 완화</td> </tr> <tr> <td>스위스</td> <td>라이트 बैं킹 라이선스</td> <td>•예금한도 제한, 예금보험제도 제외 •자본금요건 완화(1천만→30만CHF 또는 수취예금 3% 중 큰 금액)</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주요국의 기존 시중은행그룹 대상 특화은행 허용 사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국가</th> <th style="width: 20%;">은행명</th> <th style="width: 6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미국</td> <td>Chase</td> <td>•JP모건이 영국에 설립한 챌린저뱅크</td> </tr> <tr> <td>일본</td> <td>Paypay Bank</td> <td>•SMBC가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td> </tr> <tr> <td>유럽</td> <td>Hello Bank</td> <td>•BNP Paribas가 설립한 챌린저뱅크</td> </tr> </tbody> </table>	국가	인가단위	차별적 진입요건	미국	특수목적은행	•예금·대출·수표지급 중 일부업무만을 수행 •사업모델에 따라 개별적 자본금요건 적용	영국	소규모특수은행	•소매금융으로 업무범위 제한 •자본금요건 완화(5백만→1백만파운드)	챌린저뱅크	•소매금융, IT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화 •최대 12개월 시범운영	호주	제한적 인가	•예금한도 및 거래상대방 제한 •최대 24개월간 자본금 및 지배구조요건 등 완화	스위스	라이트 बैं킹 라이선스	•예금한도 제한, 예금보험제도 제외 •자본금요건 완화(1천만→30만CHF 또는 수취예금 3% 중 큰 금액)	국가	은행명	비고	미국	Chase	•JP모건이 영국에 설립한 챌린저뱅크	일본	Paypay Bank	•SMBC가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	유럽	Hello Bank	•BNP Paribas가 설립한 챌린저뱅크
국가	인가단위	차별적 진입요건																												
미국	특수목적은행	•예금·대출·수표지급 중 일부업무만을 수행 •사업모델에 따라 개별적 자본금요건 적용																												
영국	소규모특수은행	•소매금융으로 업무범위 제한 •자본금요건 완화(5백만→1백만파운드)																												
	챌린저뱅크	•소매금융, IT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화 •최대 12개월 시범운영																												
호주	제한적 인가	•예금한도 및 거래상대방 제한 •최대 24개월간 자본금 및 지배구조요건 등 완화																												
스위스	라이트 बैं킹 라이선스	•예금한도 제한, 예금보험제도 제외 •자본금요건 완화(1천만→30만CHF 또는 수취예금 3% 중 큰 금액)																												
국가	은행명	비고																												
미국	Chase	•JP모건이 영국에 설립한 챌린저뱅크																												
일본	Paypay Bank	•SMBC가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																												
유럽	Hello Bank	•BNP Paribas가 설립한 챌린저뱅크																												

	<p>□ 美 실리콘밸리뱅크는 별도 인가단위에 따른 특화은행은 아니지만, 사실상 고위험 벤처기업만을 고객으로 상대하는 특화은행처럼 기능</p> <table border="1" data-bbox="424 280 1370 566"> <thead> <tr> <th data-bbox="424 280 630 320">구분</th> <th data-bbox="630 280 1370 3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4 320 630 389">현황</td> <td data-bbox="630 320 1370 3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미국내 16위, 실리콘밸리내 1위 (자산액 300조원, 대출액 99조원, BIS비율 15.4%) </td> </tr> <tr> <td data-bbox="424 389 630 566">비즈니스모델</td> <td data-bbox="630 389 1370 5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임직원의 예적금을 받아 다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 및 벤처기업 금융중개·지분투자 수행 •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각종 컨설팅, 행사유치, 보고서작성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 </td> </tr> </tbody> </table>	구분	비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미국내 16위, 실리콘밸리내 1위 (자산액 300조원, 대출액 99조원, BIS비율 15.4%) 	비즈니스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임직원의 예적금을 받아 다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 및 벤처기업 금융중개·지분투자 수행 •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각종 컨설팅, 행사유치, 보고서작성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
구분	비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기준 미국내 16위, 실리콘밸리내 1위 (자산액 300조원, 대출액 99조원, BIS비율 15.4%) 						
비즈니스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임직원의 예적금을 받아 다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 및 벤처기업 금융중개·지분투자 수행 • 기술력은 있으나 경영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각종 컨설팅, 행사유치, 보고서작성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 						
필요성 (장점)	<p>□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된 분야에 강점을 가진 신규 플레이어 진입으로 은행서비스 경쟁촉진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한 금융서비스 수수료 인하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IT기술과 접목되어 서비스 제공시 비용 감소 및 업무효율화 등으로 가격인하, 서비스 양질화 및 기존 대형은행과 경쟁 가능 ○ 데이터 결합, 다양한 연계서비스 구상 등 대고객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에 대한 관계형금융·신용평가고도화 등을 통해 기존 은행서비스 공백 해소 						
문제점 (단점)	<p>①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화은행에 대한 충분한 규제완화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 ○ 특정 여신 부문에만 집중하는 은행은 해당 부문의 자산건전성 충격을 다른 부문의 여신을 통해 흡수하기 어려워 더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특화은행의 경우 높은 경기순응성, 정확한 신용평가 어려움 등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 - 지급결제 특화은행의 경우 지급결제 업무로만 적절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문제 발생 가능하며, 예금시장경쟁 심화로 거시건전성 리스크 상승 가능 ○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 및 인프라 구축 미흡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FCA의 디지털은행 자금세탁 방지 관련 리스크 점검 결과 : 고객위험평가 미흡, 고객확인 의무 미흡, 금융범죄 관련 시스템 변화관리 미흡, 불충분한 혐의거래 보고 등 <p>② 시장질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주력자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금산분리 논란 등 가능 ○ 완화된 인가기준으로 인해 소규모 전문은행 난립 우려 						
고려사항	<p>□ 틈새시장 집중 등 대형은행 과점적 구조에 경쟁 촉진 효과는 미미하고, 은행법 개정에 장기간 소요</p> <p>□ 기존 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금융기관 등과 대동소이하여 새로운 범주의 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p>						

과제	② 은행업 추가인가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지방·인터넷전문은행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신규 설립 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은행지주 및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지주에 대한 설립·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 필요시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를 시행하여, 실질적 경쟁도를 파악한 후 은행업 추가 인가 여부 결정에 활용
필요성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 대형 시중은행 설립 시 현재 문제가 되는 대형은행 과점 해소가능 □ (지방은행) 지역 산업 및 경제구조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소비자 실질적 수요 충족 □ (인터넷은행) 은행·은행지주에 허용시 은행지주별 사업모델을 다양화하여 대형 은행지주간 경쟁 촉진, 향후 빅테크 플랫폼과의 경쟁에서도 다양한 혁신 및 소비자 편익 증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금융지주의 은행업 진입 유도 시 유효 경쟁 제고, 다양한 금융겸업 사업모형 유도 등 가능
문제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은행산업 내 은행 수가 많아질 경우 현재와 같이 과잉영업식 경쟁이 치열 → 은행산업 전반 수익성·건전성 악화 ○ 지방은행의 경우 지역 총생산 감소 등 수익원 고갈, 인터넷은행의 경우 건전성, 소비자보호 이슈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필요 ○ 금리 하락, 경기침체 등 은행경영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는 신규 은행의 건전성 문제 발생 가능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시중은행의 평균적인 규모 감안 시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신규 시중은행 설립은 어려운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작은 시중은행도 자본총계 5조원, 원화예수금 55조원 수준 ○ 은행산업 규제가 강해 신규 설립 주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모의 시중은행이 설립되더라도 과점적 구조의 구성원으로 포섭될 가능성 □ 주요 연구는 국내 은행산업은 주요국 대비 과점강도가 낮거나, 오히려 경쟁적 내지 독점적 경쟁시장에 가깝다고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상태에서는 다양한 경쟁촉진 정책, 담합 등 경쟁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나은 방법이라는 견해도 있음 □ 플레이어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은행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금리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는 등 은행 간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

과제	③ 저축은행·지방은행 전환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지방(저축)은행이 시중(지방)은행 인가요건(자본금, 지배구조)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중(지방)은행으로 전환 ※ 금산법(§4)에 따른 전환 인가 필요
해외사례	<input type="checkbox"/> 일본의 경우, 1961년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 상호은행이 출범하였으나, 고도성장기 이후 상호은행의 업무내용이 일반은행화 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방은행 전환 허용 ○ 1968년부터 우량 상호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 1992년 68개의 모든 상호은행의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 완료 ○ 현재 제2지방은행은 영업기반, 업무내용, 자금 조달 및 운용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방은행과 동일 → 법적 규제 차이 無 (은행법 적용)
필요성 (장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가 ○ 은행 수 증가로 은행산업 경쟁도 강화 ○ 소비자에게는 은행 선택의 폭이 증가 ○ 지방(저축)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 감소하여 저리로 신규대출 취급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금융회사 경쟁력 강화 ○ 지역의 중소기업·개입사업자 중심의 영업 노하우가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개입사업자 특화 은행으로서 영업 가능 - 현재 예·적금 수신과 각종 신용·담보 대출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저축은행의 업무 영역이 일반은행에서 취급하는 신탁·외환·신용카드 등까지 확대되어 지역 내 경쟁 촉진 가능 ○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민 충성도 하락 등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시 대출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 진출 확대 및 디지털 경쟁력 보완을 위한 노력 등 기대
문제점 (단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전성 문제 ○ 이미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 지방은행 추가 설립(저축은행 전환) 시 역내 금융기관 전반의 수익성·건전성 악화 우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비자 보호 문제 ○ 저축 → 지방은행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감소할 우려 - 지방은행 전환을 위해서는 업무의 동질성, 중소기업·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

<p>고려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한도 등 요건 충족이 어렵고 비용이 발생하여 現 지배주주의 전환 유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금융주력자 한도(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시중은행 10%, 지방은행 15%) 등 규제에서 차이 -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비금융주력자한도 등 요건에 대해 예외 인정 시 특혜 의혹 가능 □ 지방→시중은행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시중은행과 규모차이로 과점해소에는 한계 □ 저축→지방은행 전환 시 저축은행권 내 경쟁은 약화 □ 플레이어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은행의 업무범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현재 시중은행이 금리차에 의한 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좀 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여 은행 간 차별성을 스스로 갖도록 할 필요 □ 한편,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기존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차등규제*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하여 시중은행과의 경쟁축진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원화대출 증가액의 60% 이상 (시중은행 40%)을 중소기업에 대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범칙금리 적용 등 패널티 부여
<p>기타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외에도, 지방 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저축은행 합병 허용 등의 방안 ② 두 개 이상의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보유한 지방은행주에 대한 IT 시스템 공동사용을 통한 비용절감, 계열사간 정보공유 완화 등을 통해 시중은행과 경쟁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저축→지방은행 전환 과제 검토 경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 논의

2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과제	① 카드사 종합지급 결제 업무 허용
주요 내용	<p>□ (전금법 개정) 법 개정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외에도 은행 수준의 보편적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이체서비스 범위, 계좌개설 한도 설정 필요성 등 논의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 주요내용(예시) ></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지정 - 종합지급결제업 정의 - 상법상 주식회사여야 함 - 최소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특례 신설 - 직접 계좌 발급 可 → 금융결제망에 참가하여 이체·결제 수행 - 금융회사 수준의 신원확인 의무 부과 등 </div> <p>※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의원발의(21.11, 김병욱의원안 등) 되었으나, 현재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황</p>
필요성 (장점)	<p>① 경쟁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및 지급결제 부분에서 은행의 유효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과점 이슈를 완화 ○ 핀테크와의 경쟁 등을 통해 핀테크 Scale-up과 함께, 카드사 고객에게 신유형 서비스* 제공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 소득공제 한도 감안 신용/선불/직불 복합 결제 비율 맞춤형 서비스 등</p> <p>② 소비자 후생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계좌가 없어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통해 보편적이고 편리한 디지털금융 서비스를 제공 → 금융소외자 등 포용 가능 - 실명 확인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충전 등의 절차 없이 송금 및 결제할 수 있어 사용자경험이 개선
문제점 (단점)	<p>□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문제</p> <p>①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보험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종안전판 부재로 인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고객 경험 측면에서 은행의 예금성 상품과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 법상 금융상품으로 지정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p>※ 다만,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전부 보호(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도산시 이용자 본인 자금을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내용 포함</p> <p>② 카드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으로 은행에 비해 관련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의 금융산업 내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결제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p>③ 카드사가 가맹점 등 거래상대방에게 주거래계좌를 은행에서 자사로 옮기도록 우월적 지위 남용 가능</p> <p>※ 이에 대해, 카드사는 고유업무와 종합지급 결제업무를 별도 관리할 역량이 있고, 수취자금은 목적외 활용 금지 의무를 부과해 철저히 보호가 가능하며, 자사 상품 이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이해상충방지 알고리즘 도입 의무 등이 부과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p>
<p>고려사항</p>	<p>□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정부, 한국은행 및 업권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p> <p>○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일한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p>

과제	<p>② 증권사 법인결제 업무 허용</p>
주요 내용	<p>□ 금융결제원 규약 개정(이사회 의결사항)*을 통해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p> <p>*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업무규약 제4조⑤ … 금융투자회사는 법인이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규제 현황></p> <p>○ 증권사의 자금이체 업무는 자본시장법(§40①4)상 법인·개인 제한 없이 겸영업무로 허용</p> <p>- '07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국회 심의 내용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규약에서 증권사가 법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p> <p>○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하여 단순 송금 외 CMS-PG* 등 다양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가능</p> <p>* CMS : 급여 등 소액 대량 자금의 이체 PG : 기업·고객간 전자상거래 대금의 이체</p> <p>□ 증권사의 결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강화방안**과 연계하여 추진</p> <p>* 일시적인 자금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급기일(D일) 이후 결제대금을 납입(D+1일)하지 못할 위험</p> <p>** 예) 증권사의 유동성·건전성 관리기준을 은행권의 수준으로 개선, 증권금융의 증권사에 대한 유동성 공급역량 강화 등</p> <p>※ 한편 별도 과제로 제기되었던 '기업이 CMA 계좌를 직원에게 급여를 송금하는 계좌로 활용'하는 것은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가능한 업무(개인이 급여수취 계좌로 이용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p>
필요성 (장점)	<p>① 경쟁촉진</p> <p>○ 공정경쟁을 통한 지급결제 효율성 개선 및 비용감소</p> <p>- 증권사가 직접 지급결제망 이용 시 현행 은행연계망 이용에 따른 지급결제수수료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증권사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은행연계망) 건당 200원 ~ 500원 vs. (소액결제망) 건당 10원 ~ 14원</p> <p>○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 및 업무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 참가기관과 동일하게 법인지급결제 업무 허용 필요</p> <p>- 他 참가기관보다 많은 참가금을 납부하고 참여한 증권사에 대해 금결원 특별참가기관 중 유일하게 지급결제 대상을 '개인'으로 제한</p> <p style="text-align: center;">▣ 증권사는 자금이체대상 제한이 없는 他특별참가기관보다 많은 규모의 특별참가금(약 4천억원 : 최초 3400억원+추가)을 既 납부</p> <p style="text-align: center;">↔ 새마을금고 368억원, 신용협동조합 187억원, 저축은행 154억원</p> <p>○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트렌드는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업화에서 겸업화로 전환 중이며 국내도 업권간 불균형 완화 필요</p>

	<p>② 소비자 후생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이 자금흐름 일련의 단계(조달·투자·결제)에서 증권사의 금융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증권사 기업금융(IB)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가 기업의 일상적인 자금 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기업의 자본시장 접점이 확대되어 자본시장을 활용한 증권사의 복합적 기업금융 서비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계기로 작용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소비자 서비스 개선 예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 기업의 임직원급여 '지급'계좌 등으로 계좌 활용성 제고 + (국민) 급여(수취)계좌로 CMA 계좌 활용성 강화 ② (기업) 정부·공공기관, 보험사, 통신사, 기타 법인 등의 불특정 다수 고객자금 수납을 위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가능 + (국민) 국민은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획기적 개선 ③ (기업) 홈쇼핑·인터넷쇼핑 기업의 물품대금 수령계좌로 활용 + (국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융서비스 편의 확대 ④ (기업) 기업의 세금 등 공과금 납부계좌로 사용 가능 ⑤ (기업) 기업의 모든 지급결제를 one-stop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펀뱅킹서비스 제공' 등 기업 자금운영업무 편의성 제고 </div>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점 (단점)</p>	<p>① 건전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결제리스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는 은행대비 수신 기능이 취약하며 금융시장 상황에 민감한 자금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은행에 비해 유동성 리스크가 높음 - 금융위기 발생시 증권사의 결제리스크가 대행은행 등 기타 금융산업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음 ○ 증권사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적용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의 개인·고객 자금 관련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를 적격증권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 현재 증권사는 개인 고객자금 이체업무와 관련하여 은행과 달리 적격증권 대신 유사시 담보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투자자 예탁금을 담보로 납입 ○ 도입시 허용대상 및 기타 리스크 관리방안 등 검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지급결제 안정성과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허용대상 증권사 범위 결정, 대기업 계열사와의 거래 이슈 검토 ※ 이에 대해, 증권사는 지급결제 최초 참여시부터 한은에서 마련한 '6중 결제 안정성 보완장치'를 완비하여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

	<p>① 대행은행을 통한 차액결제방식 채택, ② 순채무한도 설정·관리, ③ 차액결제 대행한도(100%) 이상 담보제공, ④ 대행은행과의 일중(日中)계약 체결 의무, ⑤ 자본법상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 ⑥ 한은 지급결제제도 규정운영 및 증권회사 검사권 보유</p> <p>② 시장질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의 은행화로 인한 금산분리 정책 실효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에 개인자금 지급결제와 기업대출* 허용에 이어 법인자금 지급결제까지 허용할 경우 사실상 증권사가 은행업을 영위하게 되나, 금산분리 정책 등 은행업권의 각종 규제는 적용받지 않게 됨 * 자기자본 3조원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 -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대기업 계열 증권사로 결제계좌를 집중시 동 증권사로 대규모의 자금이 집중되어 금산분리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동 증권사가 재벌의 자금고화 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이에 대해, ①지급결제 허용을 은행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저축은행, 신탁 등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미 개인/법인 구분 없이 지급결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견과, - ②증권사의 자금이체는 별도 예치된 예탁금으로 한정되어 대기업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규정이 마련(자본시장법 §34)되어 있고, 현재도 은행연계망을 통한 법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나 계열사를 동원한 대규모 계좌개설은 없다는 의견도 제기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들의 증권사 법인 대상 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수요조사 선행될 필요 <input type="checkbox"/> 은행·비은행간 경쟁촉진 정책은 비이자 사업보다 단순 예대금리차 사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 등 현재 리스팅된 많은 대안들은 비이자 사업 부분이라 볼 수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은행권 쇠신이 어려울 우려 <input type="checkbox"/>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정부, 한국은행 및 업권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일한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

과제	③ 보험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주요 내용	<p>① 보험회사 겸영업무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보험업법 시행령§16 개정) → 증권사와 같이 업권법상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개인고객에 대하여 수시입출식 계좌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개인) 보험료 수납과 보험금 및 연금 지급, 각종 결제업무 등 (기업) CMS(급여 등 이체), PG(상거래대금 등 이체) 등 ※ 다만, 보험회사가 직접 한국은행 지급결제망에 참여하여 청산·지급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대행은행을 통해 수행 ○ 보험리스크와 결제리스크의 분리를 위하여 보험고객이 맡긴 지급결제계좌의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대행은행 또는 제3의 기관에 위탁토록 하고 운용대상 또한 엄격하게 제한 <p>② 보험사에 종합지급 결제 업무 허용(전자금융거래법 개정사항) → '②-① 카드사 종합지급 결제 업무 허용' 과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고, 보험사에도 허용하는 방안</p>
필요성 (장점)	<p>□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에 지불하는 지급결제 수수료가 절약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수시입출금 가능 자금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보험산업이 플랫폼화되는 과정에서 원스탑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가능 - 일회성 관계에서 벗어나 수시입출금 계좌를 통해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복합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 가능* * 보험회사는 위험에 대한 보장성 상품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용 연금 및 변액보험 등 고객 수요에 맞는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
문제점 (단점)	<p>① 건전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에 대한 자금이체업무 허용으로 은행에 비해 관련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의 금융산업 내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결제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음 - 또한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보험사의 총 위험 수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이 어려울 가능성 <p>② 소비자 보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결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가능 ○ 보험사에 지급결제 참여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경우 소비자 전가 우려 <p>③ 시장질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고금리 상품 출시 시 은행 자금 이동으로 은행 조달비용·대출금리 상승 가능
고려사항	<p>□ 「동일 업무·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 하에 정부, 한국은행 및 업권 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일한 지급결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

과제	④ 은행의 보증부대출 취급 한도 도입
주요 내용	<p><input type="checkbox"/> 은행에 공적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취급한도를 도입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취급 확대 유도</p> <p>① 은행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취급한도 도입</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금공, HUG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되는 주택 관련 대출상품 (전세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에 대해 은행별 취급한도 설정 ○ 신보, 기보 등의 보증을 받아 취급되는 중소기업·창업기업 등을 위한 정책대출상품에 대해 은행별 취급한도 설정 <p>② 비은행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 취급 확대 유도</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대출·주택구입자금 보증서 발급대상기관, PF대출 보증상품 취급 기관 등 추가(주금공, HUG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보증서 발급대상기관 추가(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보) ○ 필요시 영업구역 신용공여대출 산정 시 보증부대출 우대, 은행권 수준으로 보증비율 상향 등 인센티브도 검토 <p>※ 全 금융업권에 대해 '적격 정책자금 취급기관'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준 충족시 정책자금 한도를 배분하는 방안도 제기</p>
국내사례	<p><input type="checkbox"/> '20.11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하여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신규출시하였으나 사잇돌대출 등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아 실적 부진*</p> <p style="margin-left: 20px;">*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부 중금리대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대출 산정시 150% 가중치 부여</p> <p>→ '21.10월부터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p>
필요성 (장점)	<p><input type="checkbox"/>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공백을 해소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p style="margin-left: 20px;">* (예) 은행·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사잇돌Ⅰ' 금리는 6~9% 수준,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사잇돌Ⅱ'의 금리는 11~19% 수준(서울보증보험 자료('22.5월 기준))</p> <p style="margin-left: 40px;">➔ 여전사의 중금리대출 신용점수별 평균금리는 8.9~14.45% 수준('23.1월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기관의 고객군은 은행에 비해 저신용 차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다 다양한 차주에 금융지원 가능 <p><input type="checkbox"/> 제2금융권 경쟁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금융권은 법규상 보증부대출 등 취급에 제한은 없으나, 은행 위주 시장구조, 고객접근성 제약, 금리경쟁력 열위, 전산시스템 구축 부담 등으로 취급규모 미미* * '22년말 전세자금대출 잔액 205.4조원중 197.1조원(96.0%)이 은행 취급분 집단대출 잔액 235.4조원중 204.4조원(86.8%)이 은행 취급분 ○ 보증부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으로 신용위험을 전가할 수 있고 차주가 아닌 보증기관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낮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므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에도 기여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점 (단점)</p>	<p>① 건전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신용자 대상 보증부대출 증가는 대위변제 주체인 보증기관의 부실화로 귀결될 수 있음 - 저축은행 등의 보증부 가계대출(HUG, HF 등)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주택시장 급변 등의 상황에 취약 - 비은행금융기관은 위탁보증 심사와 보증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위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추가로 구비해야 하므로 상당한 업무 및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 은행과 달리 여전사 등은 수신기능이 없어 운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 시, 보증부대출 취급 여전사의 경우 강화된 건전성 관리 요건 필요 <p>② 소비자 보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행의 공급비중 축소에 따라 소비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상승 가능 * 같은 보증기관 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비은행금융기관의 조달비용이 통상 높고 시스템 구축 및 인력운용 비용(전세대출보증, 중도금대출 보증 등은 금융기관 위탁 보증방식) 등 부담도 발생하여 더 높은 금리가 소비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점포접근성·전산시스템 등이 금융소비자의 거래편의성을 저하할 우려

과제	⑤ 비은행금융기관의 정책자금대출 및 정책모기지 업무범위 확대
주요 내용	<p>□ 관련 법령,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정책자금대출 및 정책모기지를 취급하는 비은행금융기관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권의 은행 대비 금리 등 경쟁력 열위 극복 및 취급유인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대출 취급에 따른 역마진* 문제 해결 및 정책자금 취급 수수료 인상** 등 <p>* 현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4.15%~4.55%로로서, 저축은행 조달금리(5.7%) 상회 * (예시) 보금자리론의 경우 채권 양도시 원금 잔액의 0.4%의 수수료 지급</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정책자금 중개금융기관 제한 사례 (보금자리론) 은행 및 저축은행[주택금융공사 규정] (에너지 관련 정책자금 대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가스안전자금대출 등]), 은행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너지지원사원및특별회계법 시행령]</p> </div>
국내사례	<p>□ '14.3월 주택금융공사는 규정개정*을 통해 정책금융상품 판매금융회사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16.4월부터 저축은행의 보금자리론 취급 개시</p> <p>* (기존)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 (개정) BIS 10% 이상, 기관경고 이상 제재 없음</p> <p>→ 다만, 저축은행의 낮은 신인도, 영업망 부재에 따른 접근성 부족으로 고객이 저축은행 보금자리론을 외면함에 따라 실적 부진</p>
필요성 (장점)	<p>① 경쟁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권이 정책자금 취급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적합한 금융소비자들에게 정책자금 공급 기대 <p>② 소비자 후생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금융회사가 정책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업권별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등을 촉진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가능
문제점 (단점)	<p>① 건전성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금융기관은 정책자금 대출 심사 경험이 적어 부실화 증가 우려 <p>② 소비자 보호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지역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나 영업망이 부족해, 고객들이 거래하기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입장에서는 비은행 부문과 대출거래를 하는 것은 신용점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대출재원을 금융회사 조달자금으로 구성할 경우 비은행권에서 취급되는 상품의 금리가 은행에 비해 높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모기지 취급기관으로 은행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정책모기지 신규 취급을 위한 전산개발·유지·관리 노력 대비 정책적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임 <p>* 은행권 비중 99% 이상(22년 보금자리론 실적 기준) (현재도 저축은행, 보험사, 여전사 취급가능)</p> <p>③ 시장질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재원을 금융회사 조달자금으로 조성할 경우 보험사 등이 정책자금 대출 등을 위해 기존 채권운용 금액을 축소하여 자금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안정성 등에 있어서 관련 부처 및 기금관리기관은 비은행 부문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유인이 부족

과제	⑥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좌 발급 기관 확대
주요 내용	<input type="checkbox"/> 은행 외 금융회사(증권사 등)에 실명확인계좌 발급 업무 허용 * 특금법 시행령(§10의12②항) 개정 필요사항
해외사례	<input type="checkbox"/>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제도는 '17년 말 '가상자산 거래실명제'를 시행하며 한국이 최초 도입 * 美, 日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등에 따라 고객실명확인 요구 <input type="checkbox"/> 미국은 온라인 증권사 Robinhood 등이 고객에게 자체 증권계좌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제공
필요성 (장점)	<input type="checkbox"/>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간 경쟁에 따른 거래 수수료율 인하 및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 가능 ○ 증권사 고객은 은행에 별도 신규 계좌 개설 없이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는 등 계좌개설 관련 대고객 서비스 개선 - 증권사 등은 은행에 비해 투자 서비스, STO 등과 연계 등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 유인이 높아 관련 신규 서비스 확대 가능
문제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부처협의 등을 거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서 아래 문제를 감안하여 은행권에만 실명계정 발급을 허용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실명계정 발급 금융기관의 추가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 ① 건전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 등은 은행에 비해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L평가(FIU)에서 증권업은 은행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등 은행 외 업권으로 실명계정 발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 - 특히, 견고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소형 증권사들의 참여는 부적절 ○ 거래소 부실, 폐쇄 등 발생 시 계좌 개설 금융회사에도 다양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충분한 재무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 담당할 필요 ② 소비자 보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수신기능을 활용하여 고객예치금 보호의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은행에 한정하여 허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계좌 발급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고객예치금 분리보관·유용여부 감시 등 예치금 보호의무까지 부담 ○ 주식시장 투자자의 유입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사 고객은 위험자산 투자에 친숙하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주식시장과 유사한 거래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 고려 ③ 시장질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투자자보호 등에 집중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성과 배치 ○ 실명확인계좌 발급기관 확대 시 원화거래 가능 가상자산 거래소 난립으로 투자버블 등 발생우려 <input type="checkbox"/> 아직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가상자산업에 대한 논의나 정책방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 임을 감안할 필요